

▣ '법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전문

법계법 시행령

불기 2550(2006)년 07월 04일 제정 공포

불기 2551(2007)년 07월 05일 개정 공포

불기 2557(2013)년 07월 18일 개정 공포

불기 2568(2024)년 09월 11일 개정 공포

제1조(목적) 이 령은 법계법 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법계위원회 운영과 법계 및 법계에 따른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계위원회 직무) 법계위원회는 법 제5조에서 정한 각급 법계의 품서, 특별전형, 포상법 계, 법계무효 등을 관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항과 같다.

- ① 법계품서를 위한 고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계품서를 사정하고 그 시행을 관장한다.
- ② 대중사(명사) 특별전형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된 후 이를 총무원에 통보하고, 총무원은 중앙종회 등의 및 원로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불기 2551(2007).7.5 개정, 불기2568(2024).09.11 개정>
- ③ 중사(명덕) 특별전형 대상자를 심의하여 의결한 후 이를 총무원에 통보한다. <불기 2551(2007).7.5 개정, 불기2568(2024).09.11 개정>
- ④ 특별전형을 통한 대중사(명사) 및 중사(명덕)의 법계품서 시행을 관장한다. <불기 2551(2007).7.5 개정, 불기2568(2024).09.11 개정>
- ⑤ 포상법계는 중앙종무기관장의 제의가 있을 때 이를 심사하고, 그 시행을 관장한다.<불기 2551(2007).7.5 개정, 불기2568(2024).09.11 개정>
- ⑥ 법계에 따른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불기 2551(2007).7.5 개정, 불기 2568(2024).09.11 개정>
- ⑦ 회의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법계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불기 2568(2024).09.11 항 신설>

제3조 삭제 <불기2557(2013).07.18>

- 제4조(의제실무위원회 구성) ① 법계위원회는 법계에 따른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기 위해 의제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불기 2551(2007).7.5 개정, 불기2568(2024).09.11 개정>
- ② 의제실무위원회는 위원장·총무원 총무국장, 기획국장, 문화국장 및 계율과 청규에 밝은 비구·비구니와 의제 전문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불기2568(2024).09.11 개정>
- ③ 의제실무위원(당연직 제외)은 법계위원회의 결의로 법계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중에 한 한다.<불기 2568(2024).09.11 항 신설>
- ④ 의제실무위원회는 법계위원회의 지휘하에 법의·회장·의제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불기2568(2024).09.11 항 신설>

- 제5조(의제실무위원회 운영) ① 의제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법의·회장·의제 등에 대한 제반사항 관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불기 2551(2007).7.5, 불기 2557(2013).7.18 개정>
- ② 의제실무위원회는 법계위원회 간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불기 2551(2007).7.5, 불기 2557(2013).7.18 개정>
- ③ 의제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기 2551(2007).7.5, 불기 2557(2013).7.18 개정>
- ④ 의제실무위원회 업무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불기 2551(2007).7.5, 불기 2557(2013).7.18 개정>

제6조(보고) 의제실무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때는 즉시 그 회의 결과를 법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후 개최되는 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 2557(2013).7.18 개정>

제7조(법계별 가사) 법계법 제7조에서 규정한 법계별 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불기 2568(2024).09.11 개정>

1. 비구 법계<불기2568(2024).09.11 호 신설>

대중사	25조
중 사	21조
중 덕	19조
대 덕	15조
중 덕	13조
견 덕	9조

2. 비구니 법계<불기2568(2024).09.11 호 신설>

명 사	25조
명 덕	21조
현 덕	19조
혜 덕	15조
정 덕	13조
계 덕	9조

제8조(협조) 법계위원회와 의제실무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불기 2557(2013).7.18 개정>

부칙 <불기 2550(2006).07.04>

제1조(시행일) 이 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1(2007). 7. 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7(2013). 7.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불기2568(2024). 0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위촉된 의제실무위원은 이 영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

며, 그 임기는 2026년 11월 11일까지로 한다.